

일련번호	1-1
------	-----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

관계기관 고양동산초등학교

내 용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2(회의 소집),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1조(회의소집 등), 제14조(회의 공개원칙)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,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.

그런데 고양동산초등학교는 2020학년도 제12회, 2021학년도 제1회부터 제6회까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【조치할 사항】

- ① 고양동산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1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